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양 평 군 수

- 제 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 대상업소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행정처분 예정내용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주)정가온	천*필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길 249-12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공고기간: 2024. 3. 5.(화) ~ 2024. 3. 19.(화) (15일간)
- 관련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 의견제출: 2024. 4. 2.(화)까지
- 의견제출 장소: 경기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
- 기타사항
  - 위 업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당해 업소의 직권말소(예정)에 대하여 우리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 ☎ 031)770-2516